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1381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3128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138125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박승수, 서하윤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변 론 종 결 2021. 12. 7.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6. 10.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2. 접수 제95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9. 30.부터 2013. 4.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1.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3843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8. 'C은 원고에게 636,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8. 확정되었다.

다. C은 2016. 10. 28. 피고와 사이에, C이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2. 접수 제95615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시가 6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판결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채무와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4,000,000원 및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E은행에 대한 317,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19. 3. 13. C으로부터 ‘변상금액 감면 요청 및 상환계획 확약서(갑 제6호증)’에 따른 부동산 보유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고 취소원인을 알았거나, 또는 2019. 3. 2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통보받아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9. 2.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9. 3. 13. 또는 2019. 3. 20.경 C으로부터 그의 재산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나 이 사건 증여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18,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C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증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1) C은 2004. 12. 8.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5. 1. 12.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그의 처, 딸(피고) 및 아들(1988년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08. 2. 12. 처와 협의이혼한 후, 그 무렵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 따로 살았고, 2008. 5.경부터 2014.

4.경까지는 G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5. 혼인하였고, 2014. 10. 10. 남편과 함께 여수시로 이사한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3) C이 전처와 이혼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이후 이 사건 증여 시까지 피고와 C 사이에는 C이 피고 결혼식에 혼주로서 참석한 것과 피고가 C의 손자를 출산한 후 그를 데리고 C을 찾아가 만난 것 외에는 교류가 없었다.

4) C은 G와 동거하면서 2008. 12.경부터 2011. 3.경까지 G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증여하는 등으로 재산을 대부분 소비하였고, 2013. 4. 2. 원고 대표이사에서 퇴직한 후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3.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81,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은행으로부터 31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C은 이 사건 증여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다. 그런데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C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C을 찾아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를 증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C은 자녀들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가 C에게 연락하였고,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따라 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G에게 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G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549호로 277,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그 후 C은 위 소송에서 2017. 9.

27.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이유에 대하여, “소아당뇨가 있는 아들과 전처에게 양육비로, 나머지 것은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증여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게 된 동기는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과 전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에 대신하여 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력이 있는 피고로 하여금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G에 대한 277,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증여 당시 C이 부담하던 채무는 모두 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 별거하면서 피고와 교류가 없었던 시기에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 C의 다른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정황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별지]

목 목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1419.77㎡, 2층 1361.79㎡, 3층 1361.79㎡, 4층 1361.79㎡, 5층 1361.79㎡

6층 1361.79㎡, 7층 1361.79㎡, 8층 1361.79㎡, 9층 1361.79㎡, 10층 1361.79㎡

11층 1361.79㎡, 12층 1361.79㎡, 13층 1361.79㎡, 14층 1361.79㎡, 15층

1361.79㎡

옥탑1층 94.88㎡

옥탑2층 94.88㎡

지하실 1343.0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3213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37.4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2139.2분의 61.30

-이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